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사업목적

- 1)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본인의 신체적·정신적부담을 덜고, 대상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호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 1) 명 칭 : (주)늘사랑재가복지센터
- 2) 소재지 :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38번길 82, 2층(가야동)

3. 이용자모집에 관한 사항

- 1) 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서비스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 2) 이용대상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 3) 모집방법
 - ① 온라인 모집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www.longtermcare.or.kr) 등의 인터넷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대상자 모집을 한다.
 - ② 오프라인 모집 :
 - ㉠ 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 요양원, 노인요양병원) 홍보
 - ㉡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홍보
 - ㉢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
 - ㉣ 기타 직원 및 지인 추천 등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와 대상자 모집을 한다.

4. 계약기간

- ①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 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

영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5. 계약목적

①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대상자보관 자료를 제공한다.

다.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예방교육자료(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감염예방, 응급상황대응지침) 및 노인인권 보호지침, 급여제공범위 및 급여 외 행위,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한 지침을 제공,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받았음을 날인 후 보관하도록 한다.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나 비급여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그 비용을 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②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가. 방문요양(방문당) 급여비용<개정 2026. 01. 01>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	63,530
가-8	240분 이상	70,08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 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나. 등급별 월한도액 <개정 2026. 01. 01>

분 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금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③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처리한다.

⑤ 저소득층,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등 감경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법정 본인부담금의 40-60% 만 청구한다.

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다.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8.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④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대상자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대상자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계약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대상자

⑦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⑧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⑨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8. 서비스 내용

1. 기관은 관련 법령 및 고시,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욕구사정과 평가, 급여제공 수립 및 변경, 장기요양급여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①방문용양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가. 신체활동지원-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도움, 머리 감기 도움, 몸씻기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 유지·증진도움

나. 인지활동지원-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다. 정서지원-의사소통도움, 말벗, 격려 등

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등

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인력이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배상책임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단,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가입 제외),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배상책임

①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④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⑥ 본 기관은 **한화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갱신하여 연장하며 연간 보험료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2) 면책 범위

①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는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되,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자기부담금(면책금)을 부담한다.

② 면책의 범위는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1사고당 면책금 20만원)으로 한다.

③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